

2024년 제1회 진도군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공고

2024년 제1회 진도군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1일

진도군인사위원회 위원장



I 선발예정인원

시험명	시험방법	직급	직렬	직류	선발예정인원	비고
합계					16명	
2024년도 제1회 진도군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경력경쟁 임용시험	9급	녹지	산림자원	2명	
			시설	일반토목	10명	
				건축	4명	

II 시험방법 및 일정

1. 시험방법

- 가. 서류전형 : 응시자격, 가산점 등 기준 적합여부 서면심사
나.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필기시험(과목별 20문제, 4지 택1형)

직급.직렬		시험과목		시험시간
9급	녹지	산림자원	생물, 조림, 임업경영	10:00 ~ 11:00(60분)
	시설	일반토목	물리, 응용역학개론, 측량	
		건축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 ※ 시험문제 : 비공개(필기시험 종료 후 문제책 회수)
- ※ 합격자 결정 : 과목당 4할,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성적순에 의거 선발 예정인원의 1.5배 범위 내 합격자 결정
- ※ 면접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미달된 인원의 150% 범위(미달된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미달된 인원 2명을 더한 인원의 범위)에서 추가로 제2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

- 다. 제3차 시험 : 온라인 인성검사 및 면접시험(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실시)
- 온라인 인성검사 및 면접시험 세부사항은 면접시험 공고 시 발표

2. 시험일정

시험 공고일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험 구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24.8.21. (수)	'24. 9. 9.(월) ~ '24. 9. 11.(수) / 3일간	필기	'24.9.13.(금)	'24.9.28.(토)	'24.10.2.(수)
		면접	'24.10.2.(수)	'24.10.8.(화)	'24.10.10.(목)

※ 면접 시험 전 온라인 인성검사 실시 세부사항은 면접시험 공고 시 발표

※ 시험장소 공고 및 합격자 발표 등 시험 관련 사항은 진도군 홈페이지
(<http://www.jindo.go.kr>) 고시공고란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응시자격

가.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6. 12. 31. 이전출생자)

나. 거주지 제한 : 거주지 제한 없음(전국)

다. 응시 자격요건(자격·면허증 등) ※ 기준일 : 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직렬	직류	대상 자격증	
녹지	산림원	기술사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능사 (2년)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시설	일반토목	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2년)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축	건축	기술사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사 (2년)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 기능사 :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후 2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함

■ 해당 자격증을 보유한 자 및 해당 시험 최종일까지 취득예정자에 한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자격증은 해당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해야 하고, 자격 등 시험에 관한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될 수 있고, 합격결정 취소 및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해당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것이어야 하며,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취득이 확실한 경우 응시 가능합니다.

라. 응시결격사유 등

※ 기준일 : 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추가합격자 선발의 경우에도 해당 시험의 최초 면접시험 최종일로 합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거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
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 : 정년 >

1.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4. 응시원서 접수(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붙임서식)을 출력하여 작성

나. 접수기간 : 2024. 9. 9.(월) ~ 2024. 9. 11.(수) / 3일간

다. 접수장소 : 진도군청 총무과(3층)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중 근무시간 내(09:00~18:00)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봉투 겉표지에 “응시원서 재중” 글자 표기

※ 주소 : 우(58915), 전남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진도군청) 총무과 행정팀 채용담당자

※ 우편접수자는 우체국 통상환증서(응시수수료)와 응시표 회송용 봉투를 함께 우편송부(회송용 봉투에는 등기우표 부착, 수신인 주소와 성명 정확히 기재)

※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입니다.

마. 제출서류

1) 응시원서(붙임 1) 1부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정면상반신 반명함판(3.5*4.5) 동일사진 2매 부착
- 응시수수료 : 9급(5,000원)
 - 방문접수 : 진도군 수입증지 부착(군청 1층 민원봉사과 구입)
 - 우편접수 : 우체국 통상환증서(5,000원)

2) 응시분야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3) 주민등록초본(상세) 1부

-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병역사항과 주소이력 전체 포함 발급

4) 이력서 1부(붙임 2)

5) 자기소개서 1부(붙임 3)

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붙임 4)

7) 자격조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붙임 5)

8) 경력증명서 1부

9) 가산특전 대상 관련증명서 사본 1부(원본 지참) * 8), 9) 항목은 해당자만 제출

- 취업지원대상자(등록증), 의사상자(등록증)

5. 가산특전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의사상자 증서를 소지한 필기시험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가.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자에 한함)

-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 2) 취업지원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단위(직급/직류/임용예정기관)별로 선발 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3) 선발 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의사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자에 한함)

- 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6조에 따라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합니다.
- 2) 단,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단위(직급/직류/선발예정기관)별로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의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3) 선발 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의 1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 의사상자 등록여부, 가산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044-202-3255)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1) 가산특전을 받고자하는 응시자는 필기시험 전일까지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및 가산특전 대상 자격증(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2) 원서접수처에 필기시험 전일까지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및 가산대상 자격증 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선 자격증 사본 등을 원서 접수처에 FAX(061-540-3291) 등으로 송부하고, 원서접수 담당자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3) 필기시험전일까지 가산자격증을 취득하였다하더라도 원서접수처에 필기 시험 전일까지 가산대상 자격증 취득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가산점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4) 위의 '가' 항과 '나' 항이 모두 해당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 선택합니다.

6. 응시자 주의사항 및 기타사항

- 가.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자는 합격결정 후에도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시험 종료 후(최종 면접시험) 채용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응시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중복접수,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라.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됩니다.
- 마.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는 진도군청 홈페이지에 공고(게시)하며, 최종합격자의 개별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 바.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 시험 시행 7일전까지 진도군청 홈페이지에 공고(게시)합니다.
- 사. 현역군인의 경우에는 최종합격자 발표 전일까지 전역이 가능하여야 하며, 대학 및 회사 등 재학 또는 재직 중인 자는 임용 시부터 재직이 가능해야 합니다.
- 아. 경력경쟁 임용시험은 학업 등의 사유로 임용을 유예할 수 없습니다.
- 자. 최종 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차순위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3년(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내에는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으며, 4년(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내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진출할 수 없습니다.
- 카. 임용은 결격사유 조회 및 신원조사 후 최종결정하며, 임용된 경우에도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됩니다.
- 타. 공고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 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 포함)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도군청 총무과 행정팀(061-540-3222)으로 문의 바라며, 공고내용은 진도군청 홈페이지(<http://www.jindo.go.kr>) 고시공고란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